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8호 2019. 11. 14.(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58호 예동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03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4
- 사천시 공고 제1212호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포함) 공고 ----- 5
- 사천시 공고 제122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6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38 호

사천시 고시 제2019-258호

예동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예동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예동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500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행복예감쉼터	행복예감쉼터 A=510m ² 파고라 1개소	80.3	
	행복예감길	콘크리트 포장 L=822m 초화류 식재 1식	217.2	
지 역 경 관 개 선	씨앗뱅크	씨앗뱅크 A=1,190m ² 비닐하우스 6m×60m	21.5	
	지 역 역 량 강 화		122	
	행복플러스프로젝트	1식	20	
	월예전문가양성	1식	12	
	주민참여형마을가꾸기	1식	35	
	주민/리더교육	1식	9	
	국내선진지견학	1식	15	
	홈커밍데이	1식	14	
	스토리텔링	1식	7	
	마을경관관리	1식	10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59	

사 천 시 공 보

제 638 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8,724							
1) 행복예감센터					510							
1	축동	사다	925-1	도	123	74	사천시					
2	축동	사다	925-9	대	436	436	경상남도					
2) 행복예감길					7,024							
1	축동	사다		도			사천시					
2	축동	사다		답			경상남도					
3	축동	사다		답			경상남도					
4	축동	사다		임			경상남도					
5	축동	사다		임			국(기획재정부)					
6	축동	사다		도			국(극토교통부)					
7	축동	사다		답			경상남도					
8	축동	사다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9	축동	사다		도			사천시					
10	축동	사다		도			사천시					
11	축동	사다		전			사천시					
12	축동	사다		답			사천시					
13	축동	사다		답			사천시					
14	축동	사다		답			사천시					
15	축동	사다		답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 638 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 행복예감길												
16	축동	사다	949-6	수			국(환경부)					
17	축동	사다		임			경상남도					
18	축동	사다		임			경상남도					
19	축동	사다		임			경상남도					
20	축동	사다		답			경상남도					
21	축동	사다	357	답			경상남도					
22	축동	사다	356-4	답			경상남도					
23	축동	사다	356-3	천			경상남도					
24	축동	사다	356-2	대			경상남도					
25	축동	사다	1077	도			국(건설부)					
26	축동	사다	922-5	답			경상남도					
27	축동	사다	930	답			경상남도					
28	축동	사다	931-1	답			경상남도					
29	축동	사다	934-1	답			경상남도					
30	축동	사다	935-1	답			사천시					
31	축동	사다	936-1	답			사천시					
32	축동	사다	965-12	답			사천시					
33	축동	사다	965-10	대			사천시					
34	축동	사다	1098	도			국(건설부)					
35	축동	사다	937	답			사천시					
36	축동	사다	964-1	답			사천시					
37	축동	사다	951-4	수			국(환경부)					
38	축동	사다	951-3	도			사천시					
3) 씨앗뱅크						1,190						
1	축동	사다	356-1	답	420	398	경상남도					
2	축동	사다	356-2	대	182	61	경상남도					
3	축동	사다	356-4	답	761	69	경상남도					
4	축동	사다	357	답	225	46	경상남도					
5	축동	사다	358	답	604	595	경상남도					
6	축동	사다	358-2	답	398	21	경상남도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38호

사천시 공고 제2019-103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11. 12.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1. 12. ~ 2019. 11. 27(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94버 2907	포터II슈퍼캡냉 동탑차 (PORTER II)	박성래	2019. 11. 12.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89고6838	포터II (PORTER II)	서민규	2019.11.12.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38 호

사천시 공고 제2019-1212호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포함)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12.

사 천 시 장

1. 대상지역 : 사천시 공공하수처리 구역

2. 부과대상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오수발생량.
-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

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139,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894,000원/m³(최초 산정)
(다만 타행위의 경우는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며,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공사시행)

4.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일 접수 분부터 적용하되, 기 통보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단가적용.
-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되, 공고 전 협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협의된 내용을 따른다.

5. 기타문의사항 :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055-831-5558, 5555)

사 천 시 공 보

제 638 호

사천시 공고 제2019-122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11. 12.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1. 13. ~ 2019. 11. 2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31누6422	SM5	김민찬	2019. 11. 12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94버2907	포터 II 슈퍼캡냉 동탑차 (PORTER II)	박성래	2019. 11. 12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89고6838	포터 II (PORTER II)	서민규	2019. 11. 12	소유자 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